◉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-63호

「약사법」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나,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28일

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

1. 처분대상

업종(허가번호)	업체명	대표자명	소재지
의약외품 제조업 (제132호)	주식회사 바론마스크	송*화	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길 212
의약외품 제조업 (제218호)	오토텍㈜	박*진	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3길 15 A동 일부
의약외품 제조업 (제102호)	주식회사 퀸즈	박*웅	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농업인길 80
의약외품 제조업 (제220호)	시스컨파트너스 주식회사	김*원	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비학로 1904 가동 1층
의약외품 제조업 (제52호)	우주위재상사	박*옥	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71길 102

2. 처분사항

○ **제조소 폐쇄**(2024. 12. 27.자)

3. 처분사유

○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

4. 근거법령

○「약사법」제31조제4항 및「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」제3조제1항

○「약사법」제76조 및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95조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의 기준 Ⅰ. 일반기준 제9호, 제11호

5.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,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(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)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※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, 온라인 행정심판(www.simpan.go.kr)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[문의: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(전화: 053-589-2706, Fax: 053-592-2709, E-mail: dcp1983@korea.kr)]